국무조정실
국무총리비서실

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 5. 1.(목) 10:00 배포 2025. 5. 1.(목) 08:00

새만금 도시계획 정비·수질개선 효과 확인 등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 가속화

- 제32차 새만금위원회 개최 -

-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(안) 심의·의결
- 새만금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효과 종합평가 결과 심의
-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.관리체계 개선대책 마련

□ 새만금위원회는 제32차 위원회를 개최(서면회의, 4.14.~4.23.)하여 ①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(안)(심의 안건)과 ②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보고(심의 안건), ③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.관리체계 개선대책(안)(보고 안건)를 논의하였다.

<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(안) (새만금개발청) >

□ 제32차 새만금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'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(안)'을 심의하였다.

○ **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**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에 190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**새만금 최초의 도시**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'23.6월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'23.11월부터 현재까지 1공구(75만평)를 조성 중에 있다.

□ 이번 **변경(안)**은 통합개발계획 수립('20.12.) 이후 새만금 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'26년부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(2선석)에 따른 항만배후 수요 등 **변화된 여건**을 **반영**하여 수변도시를 「**기업지원+ 항만배후 특화도시**」로 **전환**할 수 있게 마련되었다.

○ 증가된 산업용지 수요에 맞추어 **기업복합용지 도입** 등으로 **안정적으로 기업을 지원**하고, 항만과 가장 인접한 부지로써 항만배후부지로 활용하여 **글로벌 물류중심지로 성장**할 수 있게 **항만배후기능**을 **강화**한다.

○ 또, '25년 재수립중인 **새만금 기본계획(MP) 변경에 맞춰 인구, 장래 산업수요 등을 연계**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약 48만평에 대해 개발을 유보하였고, 전체 일괄조성 방식에서 **단계별 개발방식***으로 전환한다.

* (단계별 개발) 1·2단계(1·2·4공구)는 일부 단독택지를 제외한 주거용지 공급을 유보하고, 3단계(3공구)는 개발을 유보한 후, 향후 MP 변경과 연계하여 인구, 장래 산업수요에 맞추어 개발

○ 이 밖에도 **육·해·공 환승센터 연계 특화전략**을 마련하고, **적기에 기반시설을 공급**하는 등 수변도시의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도시의 초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.

□ 이번 통합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수변도시의 뼈대를 구축하는 **기반시설공사**는 **더욱 안정적으로 추진**할 수 있게 되었고, 도시의 기능을 결정하는 **구역별 용지**는 첨단산업·물류용지 및 유보용지 확대 등 추후 **새만금 기본계획(MP) 변경과 연계**하여 **더욱 효율적으로 개발**할 수 있게 되었다.

○ 새만금청의 변경(안) 최종 승인·고시에 따라 상반기 내 2·4공구 조성공사도 발주를 시작하고, **연내 첫 분양**을 **개시**하는 등 수변도시 조성공사도 **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**할 계획이다.

《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개요 》

○ **(위치)** 새만금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(새만금 신항만 뒤편)
○ **(면적)** 6.25㎢(약 190만평)
○ **(기간)** 2019년~2028년 * MP 연계 기간 조정
○ **(총사업비)** 19,985억원
○ **(사업시행자)** 새만금개발공사
○ **(도입기능)** 기업지원·주거·상업·업무·복합 등
○ **(계획인구)** 20,700명(개발유보 18,367명)

〈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(환경부) 〉

□ 두 번째 안건으로 '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'를 심의하였다.

□ 새만금유역 3단계 **수질개선 단기대책은 '21년부터 '23년까지 126개 사업이 추진**(총 4,503억원 투자)되었으며, **'20년 12월부터 해수유통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**하였다.

※ **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 대책**('21~'30, 단기('21~'23), 중장기('24~'30))
144개 세부사업, 총사업비 1조 6,875억원 투자계획
수질목표 도시용지: Ⅲ등급(총유기탄소(TOC) 5.0㎎/L 이하, 총인(T-P) 0.05㎎/L 이하),
농업용지: Ⅳ등급(총유기탄소(TOC) 6.0㎎/L 이하, 총인(T-P) 0.1㎎/L 이하)

○ 단기대책 추진 및 해수유통을 확대한 이후 새만금호 내 수질은 개선되었으며, **'23년 도시용지 총인(T-P)을 제외*하고 목표수질을 달성**하였다.

* 원인: 많은 양의 강우(동진강 유역 '22년 81.2mm → '23년 161.5mm)로 인한 오염 유입 등

○ 다만, 여름철 강우로 담수 유입이 많아져 표층과 저층 간 염분 밀도 차이로 성층(成層, stratification)이 강화되면서 저층에서는 빈산소 환경*이 형성되는 한계도 나타났다.

* 수심 5m 이하 저층에서 용존산소가 2.0mg/L 미만 수준

□ 새만금호 장래 수질예측 결과 해수를 하루 2회 유통하는 경우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**앞으로도 하루 2회의 해수유통을 확정**하고, **남은 기간 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**이다.

○ 우선 하루 2회 해수유통을 2025년 재수립 예정인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하고, 여름철을 포함하여 연중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하기 위해서 해수유통량 확대 시설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후속 검토할 계획이다.

○ 아울러 남은 기간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, 동진강 유역 유입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중심으로 저감사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.

<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 · 관리체계 개선대책(안)(국조실) >

□ 세 번째 안건으로 '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·관리체계 개선대책(안)'을 논의하였다.

○ 새만금호 내에는 어업 보상('95~'09)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**어선들이 조업 중**이며, 이에 대한 **단속·관리**와 **안전조치**는 **필요**한 실정이다.

□ 이에 **국무조정실**은 불법어업 확산 방지와 어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**3가지 추진과제**를 담은 **'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·관리체계 개선대책'**을 **마련**하였다.

○ 먼저, 불법어업이 확산되지 않도록 **단속을 강화**해 나갈 계획이다. **해경**은 노후화된 **단속장비**를 신속하게 **정비**하는 한편, 국무조정실 등을 비롯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·군은 **합동어업 단속**을 **실시**(연2회)할 계획이다.

○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연2회 불법어업 **실태조사**를 **실시**하는 한편 포획·채취된 **수산물**의 **안전성 검사 실시**와 함께 **검사 대상 어종**도 **확대**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다.

○ 마지막으로 **안전조치**와 **계도**를 **강화**한다. 어업행위의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**한국농어촌공사**는 어선의 **배수갑문 접근 방지시설**(수상안전부표 등)을 **설치**하고, **새만금개발청**은 **현수막** 등을 **설치**할 계획이다.

□ **새만금위원회 김홍국 공동위원장**은 "이번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, 환경·안전관리 분야에서 개발과 환경, 지역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특화도시 공간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"라며

○ "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들이 함께 계획된 새만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" 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 새만금 위원회 개요

담당 부서 <총괄> 위원회 운영	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	책임자	과 장 박상국 (044-200-1902)
		담당자	사무관 노태근 (044-200-1905)
담당 부서 <공동> 스마트 수변도시	새만금개발청 국제도시과	책임자	과 장 천용희 (063-733-1160)
		담당자	사무관 한일수 (063-733-1161)
담당 부서 <공동> 수질개선대책	환경부 물환경정책과	책임자	과 장 배연진 (044-201-7001)
		담당자	사무관 윤재웅 (044-201-7015)
담당 부서 <공동> 불법어업 관리	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	책임자	과 장 홍지광 (044-200-1903)
		담당자	사무관 서용석 (044-200-254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 임 **새만금위원회 개요**

□ 설치 근거 :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3조

○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, 관리 및 환경보전 등 **중요사항을 심의**하기 위해 **국무총리 소속**으로 설치('09.1.14~)

※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단 설치(새만금사업법 제33조의 2)

□ 구 성

○ **위원장**(국무총리, 민간 공동위원장) 포함, **30인 이내**(現 29명)

* 민간 공동위원장 : 김홍국 하림지주 대표이사

- 당연직(13) : 기재·과기·행안·문체·농식품·산업·환경·고용·국토·해수부 장관, 국조실장, 새만금청장, 전북도지사

* 공동간사 : 국조실 경제조정실장, 새만금개발청 차장

- 위촉직(14) : 농업・환경・해양・도시・문화 분야 전문가 등

□ 기 능 :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・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 심의

○ 새만금 기본계획,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, 개발계획,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

○ 연차별 투자계획,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관리・운용

○ 기타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사항 등